

행복한 국민, 안전한 사회! 행정안전부가 함께 합니다



행 정 안 전 부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혼합방식에 의한 공동계약 관련 통보

1. 우리부는 지난 10.26에 업체의 입찰참여기회 확대를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혼합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에서 공동이행방식에 참여한 입찰자는 분당이행방식에 참여할 수 없도록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동 규정의 **특별한 사유**의 범위 대하여 다음과 같이 유권해석하여 알려드리니 입찰업무 처리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의 일괄·대안공사 및 최저가입찰 대상공사

○ 기타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수의 업종 참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혼합방식에서 중복참여를 제한할 경우 사실상 공동수급체 구성이 곤란한 경우. 끝.

행정안전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재무과장), 부산광역시(회계재정담당관), 대구광역시(회계계약심사과장), 인천광역시(회계계약심사과장), 광주광역시(회계과장), 울산광역시(회계과장), 경기도지사(회계과장), 강원도지사(세무회계과장), 충청북도지사(회계과장), 충청남도지사(세무회계과장), 전라남도지사(세무회계과장), 경상북도지사(회계계약심사과장), 경상남도지사(회계과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총무과장), 전라북도지사(세무회계과장), 서울특별시교육감, 부산광역시교육감, 대구광역시교육감, 인천광역시교육감, 광주광역시교육감, 대전광역시교육감, 울산광역시교육감, 경기도교육감, 강원도교육감, 충청북도교육감, 충청남도교육감, 전라북도교육감, 전라남도교육감, 경상북도교육감, 경상남도교육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주우관 조대정 서기관 최두선 회계공기업과장 구본근 전결 12/08

협조자

시행 회계공기업과-7800 (2010. 12. 08.) 접수 / http://www.mopas.go.kr
우 110-760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 대국민공개
전화 2100-3909 전송 2100-3899 / djey@mopas.go.kr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